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지우선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,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안건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2006. 10. 4. 제정)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및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,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, 제7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6. 25. ~ 7. 15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